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신보미** · 심태섭***

<국문초록>

유사 금융상품 및 타 금융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저축성보험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2013년 2월 15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를 그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을 규율하는 다른 법이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축성보험의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과 관련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전환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면서, 보험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석사, 공인회계사

*** 교신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13. 10. 31. 1차수정일 : 2013. 12. 12. 게재확정일 : 2013. 12. 23.

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범위를 보험관련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거나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 납입방식별로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개정 시행령 하에서,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수익자의 보험차익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 제외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까지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를 계속 하면서도, 고소득자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차단하고, 적용의 복잡성도 해결하여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 보험과세제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생명보험, 보험계약, 보험상품

I. 서 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 보장은 더욱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또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도 희박해지고 있어, 신체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금융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수령 방식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상품 혹은 금융업종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업은 은행업 등 다른 금융업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위험을 보

1) 공적 보장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에 대하여는 서희열 외(2010)의 내용을 참조.

장하고 이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산업이므로, 보험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여전히 위험보장에 있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과세체계는 보험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타 금융상품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은 2013년 2월 15일 타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및 조세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관련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없이 단기간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히려 과세실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다른 형태의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다.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 이전에도 보험 관련 세법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과세당국의 해석이 있더라도 그 해석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 견해가 상반되는 등 세법상 명확한 과세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혼란이 있어 왔고 과세관청과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세 불확실성도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개정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제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요건의 복잡성으로 명확한 세법 적용이 더욱더 어려워져, 종전의 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살펴보고, 동 시행령 적용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업법 등 유관법령과 그 하위규정인 보험감독규정의 내용, 그리고 보험계리 등 보험상품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고, 피보험이익의 주체(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일치)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으로 본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의 경우는 다

른 생명보험상품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에 제외하여,²⁾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연금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기존 연구와 달리, 현재 가장 구체적인 보험차익 과세기준인 2013년 2월 15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대한 연구이며, 동 시행령을 중심으로 소득세 등 세법과 보험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측면에서 동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우선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동 시행령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세무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Ⅱ. 보험차익 관련 관련 규정 개편의 배경 및 취지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검토대상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개정 배경 및 취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외국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2013년 2월 15일 개정되었다.³⁾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보험계약

2)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제1-2조의2 관련)에서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3) 동 시행령 개정 전후의 조문의 비교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기간 10년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성진규, 2013)으로 변경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구체적으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차익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으로 종전 규정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⁴⁾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취지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15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가 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가. 과세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장기보험가입 유도 등 정책적 이유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부

4) 본 연구에서는 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한 내용은 논문 분량 사정에 의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보미(2013)의 61면 이하의 내용을 참조.

5)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2012. 8. 8. 「201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와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그리고 기획재정부, 2013. 3. 13.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차익이 다른 금융권의 금융상품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효과를 저축성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변액보험과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인 집합투자증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이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부담이 없다. 물론,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집합투자증권 투자 시에도 부담하는 비용인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수탁사 보수는 제외)를 고려하면 보험상품이 반드시 세제로 인해 항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금융상품의 운영 실적이 금융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두 금융상품 간의 세부담 금액은 큰 차이가 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수익의 경우에는 최고 41.8%의 한계세율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따라서 고소득자들에게는 변액보험이 절세 목적의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구체적으로 운용수익이 2,100만원⁶⁾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교⁷⁾ 분석

6)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7)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조심 2009서3897, 2010. 12. 23).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금융상품별 부담세액 비교

구 분	편 드	변 액 보 험
운용수익 ^{주1)}	2,100 만원	
소득 구분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2)}
원천징수세율	15.4%	과세 제외요건 충족시 과세 제외
종합소득세율 ^{주3)}	41.8%	
부담세액	349.8만원 ^{주3)}	없음(과세 제외)

※ 출처 : 기존의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주1)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함.

주2)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주3) 종합소득세율 중 최고세율을 가정하여 산출

$$(2,000\text{만원} \times 15.4\%) + [(2,100\text{만원} - 2,000\text{만원}) \times 41.8\%] = 308\text{만원} + 41.8\text{만원}$$

위 표에서 비교 분석한 바와 같이 유사 금융상품 간의 세효과 차이는 형평성 관점에서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과세형평성의 관점에서 금번 보험차익에 대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조세회피 방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과세 제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했다. 다만,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에 i)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ii)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다. 우선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요건별 조세회피의 방식을 정리함으로써 이번 세제 개편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게다가 집합투자상품의 경우 주식거래 관련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세만이 아니라 교육세 등의 과세 요소를 감안하여 책정된 사업비 요소를 고려하여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첫 번째 조세회피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편시 많이 언급되었던 즉시 연금 상품을 통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상의 “납입한 보험료” 및 “확정된 기간” 문구에 근거하여, 계약 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수익)”을 지급하고 10년 경과 후부터 불확정 기간인 “종신형”으로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조세회피의 형태는 “연금형태” 문구의 우회가 가능한 특정 보험 상품과 보험계약 이전을 결합한 방식이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보험기간 중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대출로 인한 기타부대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보험계약담보대출(약관대출)제도를 활용하거나, 해약 또는 감액⁸⁾(일부해약)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필요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해약하는 경우에는 자금상황이 호전되어 동일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 또 다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무이자로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⁹⁾상품이 개발되었다.

물론 금번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보험계약 기간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과 같은 주기적 인출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수시로)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인출”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중도인출하더라도 과세 제외 되는 것

8) 감액시까지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계약상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 달하지 않았을 것이나,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험료 감액과 보험금의 감액이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9) 예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험이므로 의무납입기간이 있으며, 이외에도 약관에 따라 다양한 제한(예를 들어, 최소보험료와 최대보험료와 같은 추가납입 가능 보험료의 범위)이 존재한다.

과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의 특성을 결합하여 저축성보험 과세 제외혜택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소위 비과세통장 증여 형태의 조세회피가 있어왔다.

즉, 부모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고, 최종 보험금 수령시 보험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계약자 명의변경 전에 적립금을 모두 중도인출¹⁰⁾한 후 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해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다면, 보험계약으로 재산권 이전이 일어날 경우 증여세 과세방식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때 이전된 적립금은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보험계약 유지기간의 기산 시점을 최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당초 계약한 때부터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과세 제외요건 충족으로 소득세가 과세 제외된다.¹¹⁾

이상과 같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경우, 타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과 조세회피의 문제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철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OECD국의 과세 경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칙적 과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장기보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과세 제외요건을 강화하여 예외적 과세 제외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10) 일반적으로는 환급액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적립금이 중도인출만으로 0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중도인출 이후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적립액이 소진되거나,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라고 하여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공제되므로, 그로 인해 적립금이 0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11) 이에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당초 개정안은 중도인출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최종 개정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보미(2013)의 31~32면을 참조하시오.

3. 주요 외국의 보험차익 과세 현황

보험차익에 대하여 주요 외국의 과세방식을 보면, 우선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¹²⁾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 상당히 많은 나라가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무조건 과세하는 경우는 이태리(자본이득으로 과세), 브라질, 우루구와이 등 극히 일부의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에 대한 보험차익만을 과세하는 나라로 대표적인 국가는 덴마크(15%의 일정률로 과세함)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3년 미만 기간의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20%를 과세한다. 이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보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맞는 적격보험에 대하여는 그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¹³⁾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

12) 주요 국가의 보험차익에 대한 것은 PriceWaterhouseCoopers(2012)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세계 주요 42개국의 보험일반, 생명보험 및 주요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보험 관련 세제의 내용은 서희열 외(2010)를 참조.

13) IRC §101.

Ⅲ. 개정 보험차익 과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보험차익의 과세전환은 과세형평성과 조세회피 방지라는 차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 전환시 신설된 과세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의 특수성 및 실제 보험상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부족으로, 과세실무상 적용의 문제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기준으로 동 시행령의 과세실무상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저축성보험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저축성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이후 저축성보험 범위의 중요성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금번 개정 이전에도 과세되는 보험차익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한정되므로, 과세대상 저축성보험의 범위 문제는 기존에도 중요한 문제였으나, 개정 시행령과는 달리 과세 제외에 해당되려면 10년 유지요건만 충족을 요하였으므로 과세실무상으로 문제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립식 보험계약의 과세 제외요건을 미충족한 보험계약의 경우 개인별로 2억원의 과세 제외한도가 신설되고 중요한 계약 변경시 계약 유지기간을 재기산하도록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시 혹은 계약 변경시 해당 보험상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과세 제외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과세 제외한도 2억원은 인별 한도이므로, 보험 등 계약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타사에서 과세 제외한도의 소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정보를 자료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¹⁴⁾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된 이후 저축성보험의 범위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나. 저축성보험의 범위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

(1) 보험구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의 문제점¹⁵⁾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보험을 저축성보험 혹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손영철·김종필(2012)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¹⁶⁾를 반대해석하여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을 반대해석하여 보장성보험을 만기 또는 중도해지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정의하여, 보험업감독규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¹⁷⁾

14)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규정되어 있다.

15)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기에, 실제 법 적용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이하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2015년 3월 13일의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와 2013년 4월 19일의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관련 설명회 내용 및 생명보험협회 배포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16)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중 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17) 보험업감독규정의 제1-2조(정의)에서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세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 역시 세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¹⁸⁾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험업법상 저축성보험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과세 제외 보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장성보험도, 즉 보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장성보험을 포함하여 과세 제외 2억원 한도 계산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무적으로 과세 제외되는 적립식 보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최초 계약 가입시점에 알 수는 없으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과세 제외한도 2억원의 인별 관리를 위해서 최초 보험계약시부터 과세계약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최초 계약시부터 과세 제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최초부터 과세계약인 경우에는 중도에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세하고, 최초에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한 계약이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건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2011. 1. 24. 개정).
3.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18) 2013년 4월 19일의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설명회시 관련 담당자의 답변 내용이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보험차익 세제 관련한 고객안내문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클 수 있는 보장성 보험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립전환 또는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보장성보험¹⁹⁾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해지 후 동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적립금 전액이 저축성보험 신규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부된 것으로 보아 변경시점에 2억원 과세 제외한도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혹은 적립식 보험계약 요건인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 충족을 위해 전환시점의 적립액 상당액을 향후 적립식 보험료로 계속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적립식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험구분기준은 ‘보장성보험에서도 보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둔 반면, 동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경우는 다른 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에서는 보험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소득세법 제52조를 차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법령 내 조항 간의 일관되지 않은 보험구분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있다. 그리고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구분기준이 보험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분기준과 상이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래에서는 보험구분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보험의 구분 기준

앞에 언급한 보험구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의 문제점은 소득세법상 보험구분기준이 보험업감독규정의 보험구분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보험구분,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한 구분기준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

19) 이 경우 “보장성보험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보험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3. 13, 9면).

〈표 2〉 보험의 구분 기준

구 분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보험업법 감독규정 ^{주1)}	기준연령 요건 ^{주2)} 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소득세법상 규정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주3)}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중도에 보험계약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주4)}

주 1) 보험업감독규정의 제1-2조(정의)

주 2) 만40세 남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임(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호)

주 3) 소득세법 제52조

주 4)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는 없어,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시의 정의를 차용하였음.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이나 보장성보험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정의는 없다. 다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를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보험계약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의 범위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보험”이라 하고 있다.²⁰⁾ 이에 따라 최초의 동 신설 조항에서 의미하는 보장성보험은 특별공제 조항상의 정의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의미하고, 이는 보험업감

20)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9면.

독규정상의 보장성보험의 정의를 일부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을 “기준연령요건(만 40세 남자)에서 생존시”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을 “기준연령요건(만 40세 남자)에서 생존시” 보험금과 보험료를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이를 “만기 혹은 중도해지 시점”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실무상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구분과 소득세법상 구분이 상이하여질 수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상으로는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된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로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여전히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지만, 소득세법상은 최초부터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이외에 보험구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금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보험의 구분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보험구분기준과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보험구분기준이 상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장성보험의 경우 향후 보험차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의 경우는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보험,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는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이 종신보험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²¹⁾ 즉, 소득세법상이나 보험업법상 최초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었던 종신보험이 중도해지로

21) 보험업감독규정의 구분기준으로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 7년 이후, 일반적으로는 10~15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계약시점부터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저축성보험한도 2억원에 반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분 및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등 세무상 과세대상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보험구분기준이 상이하여, 고객과 보험회사의 실무상 혼선과 또한 조세탈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보험업에서 적용하는 보험구분기준과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선과 또한 이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조세탈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즉,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기준연령에서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기에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하였던 보험이 중도해지로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이를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험실무상 세법상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별도로 유지하지는 않고 최초 계약시 해지 여부 및 해지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차익의 발생 여부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 실무 업계의 혼선과 의도하지 않은 (혹은 의도된) 조세탈루(혹은 조세회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는 보험구분기준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보험구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항의 적용 대상 보험의 범위에 대한 혼선은 우리 세법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정의만하고 있고 ‘저축성보험’ 자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명문의 규정은 없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앞에 언급한 보험구분 기준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과 세법규정이 상이하게 때문이다.

보험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회계 및 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우선 기업회계 측면의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이 있다(이하 ‘K-IFRS 규정’이라 함). 그리고 보험감독기관의 감독목적용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일반적으로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 SAP)”이 있다. 그리고 보험 관련 세법규정(Tax Accounting Principle, TAP)이 있다. 보험업의 세법규정(TAP)에서는 보험업의 특수한 사정 및 환경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인 SAP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규정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도입시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업계에서 비이상적인 보험금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IFRS에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너무 낮기에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하여야 하는 보험업계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감독규정인 SAP의 규정을 대부분 반영하여, 세법규정(TAP)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²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세법상 보험구분의 기준에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구분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법 적용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일의적이고 확정적인 정의를 확보되고, 이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보다 확고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목적 달성도 가능하고, 보험 고유의 위험보장기능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과세혜택을 유지하여 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2) 관련 세법 규정은 법인세법 제30조이며,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한 보험업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2010), 조형태 외(2011) 혹은 심태섭(2011)을 참조.

이에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안으로 소득세법에 보험구분기준의 내용을 규정하되, 그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의 보험구분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세법규정(TAP)의 보험구분기준을 보험업감독규정(SAP)의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정의와 동일하게 한다면, 이미 실무적으로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정의이기에 실무적 혼선도 최소화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보험의 구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애로사항과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장성보험에서 보험차익이 발생할 경우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세법상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한다.²³⁾ 예를 들어, “저축성보험이라 함은 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료의 비율이 8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저축성보험의 정의를 세법에 명확히 한 후, 해당 투자형 보험상품은 과세 제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외의 전통형 보험상품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투자형 보험상품을 전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타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의 문제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2. 납입 방식별 과세 제외요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동 과세 제외요건은, 종신연금을 제외하면, 월적립식과 일시납이라는 납입방식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동 시행령상 각 조항의 적용 방법 및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6월 11일

23) 앞서 언급한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도 세법상 한도액은 보험업감독규정상 적립액의 90%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감독규정과 세법규정 간에 차이를 두었다.

재개정(대통령령 제24574호) 시행령²⁴⁾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세 제외 일시납 보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도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제1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과세 제외요건을 살펴보면,²⁵⁾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과세 제외요건으로 채택하였던 10년 이상 계약 유지요건을 계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외 금번 개정시 추가로 신설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요건별로 나누어 해당 조문의 의미, 그리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기본보험료 균등 요건

금번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된 과세 제외 적립식 보험계약의 요건 중 하나는 기본보험료의 균등에 관한 사항이다. 세법에는 기본보험료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 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3. 6. 11. 단서개정).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 제2호.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기본보험료²⁶⁾로 해석하고 있다.

기본보험료는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균등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동 시행령은 1배 이내의 증액까지는 균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기본보험료 증액시 보험위험의 추가인수 문제가 있어,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라 증액이 가능한 보험상품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반면, 실무상 감액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은데, 감액시 기본보험료 균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동 개정 시행령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²⁷⁾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앞으로의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해약과 동일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균등요건을 충족하는 것”²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액시 기본보험료 균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2) 5년 이상 납입기간 요건

과세 제외 적립식 보험계약의 요건 중 다른 하나는 5년 납입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중도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지 않는 한 5년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효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체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부활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납입기간 요건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에 납입 중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적립식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또는 사업방법서상에 의무납입기간이 존재하고 최초 보험계약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시점에서 최대 3년까지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이에

26)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3. 13, 1면.

27) 그러나 손해보험과는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감액시 일부해약과 동일한 절차를 취하므로 감액으로 인해 기본보험료 균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란 발생하지 않는다.

28)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3. 13, 4면.

10년의 계약 유지기간 동안 5년 이상 납입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게 되므로, 납입 중지 후 다시 납입이 재개되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10년간 계약유지는 하되 납입기간 요건 5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대부분의 보험료를 초기, 즉 5년 이내에만 납입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는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제외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분납하여 단기간에 대부분의 보험료를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5년 이상 납입기간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법에는 규정이 없이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월납 외 허용 보험료 선납기간

적립식 보험계약의 과세 제외요건인 월납요건은 6개월까지의 선납(2개월/3개월/6개월 선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보험실무상 선납한 대상 기간 내에 다시 추가로 기간경과분만큼씩 선납²⁹⁾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⁰⁾ 이렇게 선납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는 보험계약을 납입방식별로 구분하여 월적립식 계약의 경우 일시납계약과 다른 과세 제외 요건을 두고 있는데, 선납을 이용하여 제한 없이 선납할 경우 그 실질이 일시납계약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는 월적립식 계약임을 근거로 조세회피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험료 선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법에는 규정이 없이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9) 예를 들어, 6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한 후 2개월 후 시점에서 다시 기간이 경과한 2개월분을 선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0) 2013년 4월 19일의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설명회시 관련 담당자의 답변 내용이다.

(4) 개선안

위에 파악한 바와 같이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경우, 실제 세법규정을 적용할 때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는 세법에 특별한 정의가 없고 기획재정부의 해석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구두 의견 등을 통하여 법령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의 판단이나 정의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은 반드시 세법에서 정의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하여야 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 보험료 금액에 대한 규정, 5년 이상 납입기간 요건, 그리고 월납 외 허용 보험료 선납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시행령 등 관련 세법에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가능하면 보험업 관련 법규의 내용을 준용 혹은 차용하여, 보험실무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하위 규정 또는 구체적인 유권 해석 혹은 자세한 적용 해설은 복잡한 보험 실무에 있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법에 그 내용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일시납 보험계약

일시납 보험계약³¹⁾의 경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에 대하여 2억원의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억원 한도의 적용 방법과 해당 규정 적용시 실무상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2억원 한도 계산 방식의 예시³²⁾

보험차익이 과세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금 등의 수령자, 즉 수익자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자는 얼마든지 수익자를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 제1호.

32)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3. 13, 1면과 5면을 근거로 하여 예시를 작성하였다.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므로, 최종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은 일시납 보험계약이거나 과세 제외 적립식 보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2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동 과세 제외 2억원 한도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관련하여 일시납 보험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3> 과세 제외한도 적용의 예 1

보험계약 체결순서	일시납 보험료	인별 누적 보험가입액	비 고
1차	8,000만원	8,000만원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 제외계약
2차	8,000만원	16,000만원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 제외계약
3차	8,000만원	24,000만원	2억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동 계약 전체가 과세계약

※ 이 사례는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1면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위 표에서 계약자가 순차로 각 8천만원씩 3건의 일시납보험에 가입한 경우, 1차와 2차 계약은 2억원 한도 내에 있으므로 과세 제외계약에 해당하나, 마지막 계약은 2억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동 계약은 과세계약이 된다. 다만,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과세하는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2억원을 초과한 계약 전체를 과세계약으로 한다고 해석³³⁾하고 있다. 따라서 3차 과세계약의 보험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과세 제외한도 적용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33)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1면과 5면.

〈표 4〉 과세 제외한도 적용의 예 2

보험계약 체결 순서	일시납 보험료	인별 누적 보험가입액	비 고
1차 : 해약	8,000만원	해약으로, 동 계약의 납입할 보험료만큼 타 계약이 과세 제외 적용 가능	
2차	8,000만원	8,000만원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 제외계약
3차	8,000만원	이미 과세계약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타계약의 과세 제외한도와 무관	
4차 : 신규	11,000만원	19,000만원	해약한 1차 계약의 납입보험료만큼 4차 계약시 과세 제외 한도 여유가 발생

※ 이 사례는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3. 13, 1면과 5면의 예시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임.

위 표에서의 과세 제외계약 중 1건의 계약(1차 계약)을 해약한 후 1.1억원을 신규로 가입하였을 경우, 3차 가입 계약은 이미 과세계약에 해당하므로, 과세 제외한도와는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과세 제외 2억원 한도에서 과세 제외인 2차 계약 0.8억원을 제외하면 1.2억의 과세 제외한도가 있으므로 1.1억원의 신규 계약은 2억원의 과세 제외한도 내 해당하여 과세 제외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신규 계약의 일시납보험료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2억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해당 신규계약은 과세계약이 된다.

(2) 납입할 보험료 계산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험료가 시행령의 납입할 보험료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적립식계약의 경우에는 초회보험료를 납입할 보험료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별도의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 납입할 보험료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의 기간 개념을 살펴본 후, 납입할 보험료 산정 대상기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보험기간의 개념

먼저 보험기간이라고 하여 보험사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보장/책임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전체에 걸쳐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입할 보험료 산정 대상기간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되어 있는 기간의 개념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료 미납시 계약이 실효되는 기간인 의무납입기간이 있다.

(나) 납입할 보험료 산정기간과 문제점

납입할 보험료라고 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의 실제 총납입보험료일 것이다. 그러나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보험료를 추가납부할지를 계약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 하여 최대 납입 가능 보험료를 납입할 보험료로 본다면 실제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의사도 없는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라 납세자 입장에서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초 계약시점부터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중도에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 어느 시점의 납입할 보험료를 가지고 과세 제외한도를 판단하는지 역시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기납입보험료를 포함하여 납입할 보험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은 되나, 이에 대해서도 추후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다) 개선방안

따라서 일시납보험의 2억원 한도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범위와 대상기간, 시점별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어느 경우이던, 최초 계약일부터 의무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추가로 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시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하여, 과세 제외한도 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보험금 수령방식에 따른 일시납보험계약 2억 한도 적용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외에도 보험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한 이후 보험금 수령 방식에 따라 2억원 과세 제외한도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느냐, 연금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과세 제외 대상인 2억원 한도 계산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만일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과세 제외 2억 한도 내 보험계약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금과 동일한 효과일 것이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 수령형태에 따라 과세 제외 한도액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세중립성 관점에서 2억원의 과세 제외 한도 내 계약의 10년 유지 시점에 보험금의 수령방식과 무관하게 신규 계약에 2억원의 과세 제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성을 없애고, 또한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유니버설보험계약의 조세회피가능성과 개선방안

(1) 유니버설보험의 중도인출, 추가납입과 조세회피가능성

유니버설보험이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무이자로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보험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와 같이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다.³⁴⁾ 이러한 유니버설보험의 추가납입의 주기성 여부에 따라,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수시추가납입, 정기적인 경우에는 정기추가납입이라 한다. 정기추가납입의 효과는 기본보험료의 증액과 유사하나, 추가납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가 없다는 점에서 기본보험료의 증액과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이 최초 가입시점에서 과세 제외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는 경우, 추가납입기능을 이용하여 과세 제외한도 요건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납입시점에 추가납입보험료를 포함하여 과세 제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라”³⁵⁾고 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 2억원 한도 내 해당하여 과세 제외 계약이었던 계약도 추가납입으로 과세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기계약에 대한 추가납입이 아니라 신계약의 납입보험료가 과세 제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계약만 과세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납입과 추가납입 보험료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로 추가납입으로 과세 제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전체를 과세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두 경우에 과세효과는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3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생명보험용어해설」, 2004. 1. 9, 18면 ; 「금융생활안내서 - 보험편」, 2007. 12, 13면 참고.

35)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5면.

(가)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동시에 있는 경우

추가납입은 납입한 보험료의 2배까지 허용되며, 중도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중도인출만큼 추가납입할 수 있다.³⁶⁾ 이때, 중도인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납입액에 포함하여 과세 제외한도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도인출액에 상응하는 금액도 추가납입액에 포함하여 판단³⁷⁾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이후 추가납입할 경우, 과세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는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견해와 다르게, 중도인출액은 기납입보험료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도인출 후 그 상당액을 추가납입하는 것을 약관대출³⁸⁾ 후 상환하는 것과 유사하게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제외하여 과세 제외한도 이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각각의 견해별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이 있는 경우 과세 제외한도 적용에 대한 예는 다음의 표와 같다.

36)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2012. 2. 21.과 2012. 5. 31. 통보자료인 「변액유니버설보험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중 10면과 「변액유니버설보험 추가적용 방안」 1면에 근거하여, 추가납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text{기본보험료} \times 200\% \times \text{경과월수}) - \text{기 납입 추가납입보험료} + \text{중도인출금액}]$

37)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6면.

38) 물론 약관대출과 중도인출은 형식이 다르며,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이자가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로 인한 회계처리 및 그 법적 효과뿐만 아니라, 보험차익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표 5〉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에 따른 과세 제외한도 적용의 예

순 서	일시납보험료	인별 누적 보험가입액	비 고
최초 계약시	13,000만원	13,000만원	2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과세 제외 계약
중도인출	5,000만원	중도인출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도인출시점에서 과세 여부 검토는 요구되지 않음.	
추가납입	8,000만원	21,000만원	1안) 기획재정부의 견해 : 1.3 + 0.8 = 2.1억원 → 과세계약으로 전환 2안) 중도인출액에 상응하는 납입 분 제외 방식 : 1.3 + (0.8 - 0.5) = 1.6억원 → 과세 제외계약

※ 이 사례는 기획재정부,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Q&A」, 2013. 3. 13, 6면의 예시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임.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 제외(혹은 과세)되는 보험계약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납입방식에 따른 과세금액의 차이

기획재정부는 앞서 논의한 일시납보험계약과 달리 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납입이 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본보험료 증액과는 달리 보험료 균등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월적립식보험계약의 추가납입을 통해 과세를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천만원씩

39) 2013년 4월 19일의 저축성보험 세계개편 설명회시 관련 담당자의 답변 내용이다.

납입하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를 불입한 후 추가납입 가능한 금액은 2.4억원(1천만원 × 200% × 12개월)에 달한다. 물론, 매월 기본보험료가 크면 클수록 추가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가고 중도인출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여 더욱 커진다. 즉, 보험계약의 납입 형태에 따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6> 납입방식별 추가납입보험료의 세무상 취급

납입방식	추가납입시 효과
일시납	추가납입으로 계약자의 전체 가입계약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초과하는 경우 추가납입한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전환
월적립식	기본보험료 균등요건에 영향 없으므로 추가납입한 계약은 과세 제외

이와 같이 동일한 적립식보험이라 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방식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세무상 처리가 상이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앞에 언급한 추가납입 등으로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방식별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 규정하는 개정 시행령하에서는, 적어도 과세 제외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추가납입에 대해서도 일시납 보험계약의 과세 제외한도 2억원과 같이 한도 요건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세 제외한도를 초과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발생한 보험차익만을 과세하는 것은 보험차익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시납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 전체를 과세계약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적용 가능한

개선안일 것이다.

(나) 개인별 한도계산 등

위에 언급한 추가납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최초 계약시점에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입한 후 과세 제외 월적립식보험계약의 요건 충족을 위해 운용성과를 포함한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중도인출하여 이후의 보험료 납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질은 일시납 또는 일시납과 월납이 통합된 보험계약과 상당히 유사하나, 과세 제외한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과세 제외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납입방식별로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할 경우, 납입방식을 우회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납입방식별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하고, 계약자를 기준으로 과세 제외한도를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은 추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과세 제외한도를 부여하는 현행 방식이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으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생각하면 반드시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2억원씩 보험계약에 가입한다면, 각각의 계약자 입장에서는 과세 제외한도 내 계약이므로, 두 계약 모두 과세 제외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입장에서 4억원의 과세 제외한도를 부여받는 것이 된다. 이에 최종 수익자를 기준으로 보험차익 과세 제외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험의 장기 유지 유도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10년 이상 계약기간 유지 후 수령하는 보험차익에 한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 정도까지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를 유지하여, 보험가입 서민층을 보호하면서도 고소득자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유사 금융상품 및 다른 과세특례 상품, 타 금융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저축성보험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2013년 2월 15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 제외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험계약의 특성과 소득세법 이외 타 세법 및 보험을 규율하는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2월 15일에 개정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동 시행령 적용대상 보험계약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보험의 구분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내의 조항 간에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세 실무의 복잡성만 가중되어,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실무의 복잡성을 감수하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범위를 보험실무에서 적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과 일치시켜 보험업계의 구분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거나, 또는 저축성 보험의 정의를 소득세법에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보험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보험료 납입방식별로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개정 시행령 하에서는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는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본 개정으로 또 다른 형태의 조세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과세 제외한도를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한 납입보험료가 아닌 최종 수익자 기준의 보험차익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까지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를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자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차단하고, 적용의 복잡성도 해결하여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가 공포된 이후 단시일 내에 검토가 이루어져, 상당 부분 미진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향후 본 시행령이 일관된 법체계를 가지고 기존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과세실무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기획재정부, 『201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12.

_____,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2012.

_____,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Q&A』, 2013.

서희열·심충진·심태섭·최천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

성진규, “저축성보험 과세제도 개선”, 『월간생명보험』 4월호, 2013.

손영철·김종필,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2012.

신보미,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2013. 2. 15.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심태섭, “IFRS 도입과 관련된 2010년 세제개편의 평가”,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1호, 2011.

조형태·장연호·홍군화·심태섭, “IFRS 도입에 따른 보험준비금 관련 세제 개편과 업계 대응 노력”,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2011.

한국조세연구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산업의 세제 개선방안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2. 외국 문헌

PriceWaterhouseCoopers(PwC),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2011 edition), 2012([http : //www.pwc.com/sg/en/international-comparison-of-insurance-taxation-2009/index.jhtml](http://www.pwc.com/sg/en/international-comparison-of-insurance-taxation-2009/index.jhtml)).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ax Provisions
Regarding Insurance Proceed**

Shin, Bo Mi* · Shim, Tae Sup**

The Amendment of Article 2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avings-type net insurance proceed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becam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nable to limit the tax exemption on saving-type insurance whenever necessary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tax avoidance via insurance plan. Therefore, the amendment contributed to the taxation systems in terms of enhancement of tax fairness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financial instruments benefited from other tax incentiv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In addition, the revised provision is expected to prevent high net-worth taxpayers from avoiding the comprehensive tax regime.

However, the regulation has been amended without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as well as diversity of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industry practice and other regulations such as Insurance Business Act, although the insurance tax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and is even more complicated compared to other tax area. In addition, current tax laws related to insurance are relatively simple and abstract. Furthermore, interpretations are too unclear to apply to various practical cases, even the tax authorities' interpretations lack. Therefore, the regulation still has problems even after the amendment.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current taxation on net insurance proceeds focusing income tax and gift tax regarding the amended provision. Then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problems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Primary author :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To begin with, various types of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a boundary of insurance plan is broken. Therefore, the tax and customs office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OSF”) stretches the meaning of savings-type insurance plan at the discretion of tax authorities, regardless of classification of insurance products in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the tax exemption for traditional insurance, considering a social function and a positive impact, should be maintained regardless of preservation term, remaining the original intent of taxing net proceeds on saving-type insurance. In that, tax exemption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insurance plans. In this perspective, the concept of saving-type insurance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in order to clarify the scope of insurance to be subject to tax.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cept match with the Insurance Business Law. It needs to support the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 by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should set the limit for tax-exempted proceeds based on the ultimate beneficiaries who are taxpayer,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unfairness for the similar cases, and prevent tax avoidance. While maintaining the tax-free limit in consideration of that private insurances are able to make up for lack of public social security, the suggestion can be a proper method to prevent from utilizing insurance products insurance. Also, it would be helpful to eliminate the complexity of the law application and reduce tax compliance cost.

▶ **Key Words** : insurance taxation system,
proceeds from saving insurance, life Insuranc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product

<부 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p> <p>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 2. 18.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p>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p> <p>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3. 2. 15.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 2. 15.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2013. 2. 15. 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개정 전	개정 후
	<p>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3. 2. 15. 개정)</p> <p>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2013. 2. 15. 개정)</p> <p>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013. 2. 15. 개정)</p> <p>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신형 연금보험계약(2013. 2. 15. 개정)</p> <p>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2013. 2. 15. 개정)</p> <p>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2013. 2. 15. 개정)</p> <p>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2013. 2. 15. 개정)</p> <p>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2013. 2. 15. 개정)</p>

개정 전	개정 후
	<p>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2013. 2. 15. 개정)</p> <p>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2013. 2. 15.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자 명의를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